

#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년월일 : 2018.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직무(안 제2조)

-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나. 위촉(안 제3조)

- ▶ 고문노무사의 수(1인) 및 위촉기간(1년)에 관한 사항

### 다. 해촉(안 제4조)

- ▶ 고문노무사 해촉에 관한 사항

라. 수당(안 제5조)

- ▶ 고문노무사 수당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360만원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8. 7. 26. ~ 2018.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 )**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 적부를 작성하고 관 하여야 한다.

**제 조(비 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계 된 사 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 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하여서는 된다.

제 조(        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동 의 서

(제3조제3항 관련)

본인은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위 축 장

(제3조제4항 관련)

공인노무사 ○○○

귀하를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평창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 계 약 서 (제3조제4항 관련)

평창군수와 공인노무사 000간에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평창군 또는 하부 행정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평창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창군수가 자문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평창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라서 자문료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〇 〇 〇 (직인)

평창군 고문노무사    〇 〇 〇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 자 문 실 적 부

(제6조 관련)

[ 공인노무사]

연번	의 퇴 연월일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자 문 명	회 신 년월일	회신 용	비고

※ 자문형식은 서면 · 면담 · 전화로 구분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 카. 생략

2.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 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 ④ ~ ⑦ 생략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비용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비용 최대 360만원 예상
  - 300,000원 x 12월 = 3,600,000원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210